



# 아 산 시



수신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재 귀하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 변경 승인[우리자산신탁(주)]

1. 귀사에서 제출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6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 변경 승인신청 건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변경 승인함을 알려드리오니,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분양의 최초 신청 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규칙 26조 제5항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얻어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불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변경)안 1부.  
2.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른 준수사항 1부. 끝.

아 산 시 장



|      |              |                        |                                                             |                                                                                   |                       |      |    |
|------|--------------|------------------------|-------------------------------------------------------------|-----------------------------------------------------------------------------------|-----------------------|------|----|
| 주무관  | 장주용          | 공장설립팀장                 | 김정호                                                         | 허가행정팀장                                                                            | 대결 2023. 2. 2.<br>이명우 | 허가과장 | 전결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허가과-6629     | (2023. 2. 2.)          | 접수                                                          |                                                                                   |                       |      |    |
| 우    | 31403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 / <a href="http://www.asan.go.kr">http://www.asan.go.kr</a> |                                                                                   |                       |      |    |
| 전화번호 | 041-530-6469 | 팩스번호                   | 041-540-2559                                                | / <a href="mailto:colacider6636@korea.kr">colacider6636@korea.kr</a> / 부분공개(6, 7) |                       |      |    |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승인에 따른 준수사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얻어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합니다.
2. 승인된 모집공고안을 당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개별 분양면적, 분양가격, 입주시기 등 제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승인된 모집공고안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외 시설은 입주 불가함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 입주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중 제조시설면적을 500㎡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없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9. 분양 및 홍보 시 허위, 과대광고를 금합니다.
10.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2개월 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0일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